

사단법인 한국콩연구회 기금관리 규정

제1조(명칭) 사단법인 한국콩연구회 정관 제17조에 근거하여 기금 조성 및 관리를 원활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한다.)를 둔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학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 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3조(사업) 이 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연구회의 자립 운영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증식.
2. 연구회 특별사업 지원 등 기금활용 및 재산관리에 관하여 운영이사회로부터 위탁 받은 사항.
3. 기금조성 및 증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사업.

제4조(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출)

1.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2. 위원장은 명예회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이사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연구회장이 위촉한다.
3.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.
4.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회의록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연구회장과 운영이사회에 보고한다.

제5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보고) 위원회의 사업내용은 매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생된 수익금은 지체없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.

제7조(통장관리) 통장 및 유가증권의 명의는 ‘한국콩연구회’로 하고 연구회 자체 기금의 통장 및 유가증권은 총무간사가 보관하고 인감은 회장이 보관한다.

제8조(의결)

1. 기금의 지출 및 활용은 운영이사회의 결정에 따르며 기금의 조성 및 증식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에 따라 처리한다.
2.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.

제9조 이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